

예 산 총 칙

2006 년도 [본예산]

* 제1조 : 2006 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703,900,000	21,117,000
일 반 회 계	630,600,000	18,918,000
특 별 회 계	73,300,000	2,199,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280,000	308,400
주택사업특별회계	2,340,000	70,2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9,500,000	285,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90,000	17,7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60,000	100,8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40,000	73,200
치수사업특별회계	900,000	27,0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50,000	40,500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650,000	19,500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5,390,000	161,700
청소사업특별회계	32,500,000	975,000
장기마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	4,000,000	120,000

※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 40,470,000천원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000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비는 10,000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61,135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번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5. 재해 대책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 경비